계약학과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학칙 제5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2. “재교육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轉職)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4. “계약정원”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와 같다.

②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총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학칙 제6조에 불구하고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하며, 계약에 의하여 방학을 이용한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③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계약학과 운영요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계약에 의하여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협동수업) ①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협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협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 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협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계약학과는 협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협동수업은 본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원격수업) 계약학과는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단, 경영대학원(IMBA)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한다.

②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설치ㆍ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①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한다.

② 계약학과가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단, 대학원 수료생의 경우 입학 취소 여부 등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임금체불
2. 휴업
3. 사업장 이전
4.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5.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6.「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학생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산업체 등의 불합리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 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구조조정 등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제10조(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등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학생 납부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학과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균관대학교학칙 및 동 시행세칙, 당해 대학 학사내규, 교육부령(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 별표의 개정 규정 중 융합형기계설계학과 관련 부분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기술경영학과는 2016년 2월 29일자로 폐지하되, 폐지일 현재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의 개정 규정 중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관련 부분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의 융합의과학과 정원조정사항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1항 별표의 소재부품융합공학과 계열 신설 반영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1항 별표의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신설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1항 별표의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학석사통합과정 신설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의 일반대학원 DMC공학과 명칭 변경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